

1.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

가. 기본원칙

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**시간제취업 (단순노무 등)** 활동에 한정
- ※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
(예시,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, 회화지도강사 등)

나. 대상

- 유학 (D-2) 및 어학연수 (D-4-1, D-4-7)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
- ※ 어학연수생 중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(졸업예정자는 가능)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자격 변경일(사증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

다. 허용범위

<허용시간>

- (학부 및 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
- ※ 인증대학 유학생(어학연수생 포함) 주당 25시간 이내
- (석·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- (석·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) 주당 30시간 이내
- ※ 학기 중 공휴일 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 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
<허용분야(예시)>

-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-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
- ※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(체류정책과-495, 2007.6.28)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- 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<장소변경> :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

- 신청방법 :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

<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>

- 제한대상

-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% 이하 또는 평균학점 (이수학점 기준) C 학점 (2.0)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시간제 취업 조건 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

- 처리요령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라. 신청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
- 시간제취업 추천서 (붙임5),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(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)